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4. 조례 제1106호
개정 1992. 11. 28. 조례 제1188호
개정 1993. 7. 23. 조례 제1269호
개정 2007. 11. 14. 조례 제2067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178호
전부개정 2018. 3. 29. 조례 제2933호
일부개정 2022. 5. 19. 조례 제3411호(「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범위)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9.>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안양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